

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

하남시장(노인장애인복지과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「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선구매 대상기관 개정
- 나.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세부내용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하고,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목표비율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임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

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서,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